122. 화약류 취급자에서 발생한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

성별 남 나이 67세 직종 화약류 취급자 작업관련성 높음

.....

- 1. 개요: 전OO(남, 67)는 2000년 12월 30일 D화약에 입사하여 화약류저장소에서 화약류 출 납업무를 하던 중 2002년 3월 4일 사망하였다.
- 2. 작업환경: 전OO는 고등학교 졸업 후 광업소 및 수많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화약 장전 및 발파작업을 하다가 D화약에 입사하였다. D화약 화약류저장소에서 화약관리주임으로서 주간에 화약류 출납을 담당하였다. 부인과 함께 화약류저장소 안에 마련된 컨테이너에 기거하였다. 야간에 청원경찰 1명이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개가 짖거나 할 경우, 순찰을 도는 등 야간 경비업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계속 긴장한 상태로 생활하였다 한다. 부인에 의하면 평소 잠가두던 저장고 문을 처음 열면 화약 냄새가 심하게 났으나, 출납관리를 위해 30-120분 정도 저장고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환기가 되었다 한다. 영업소장에 의하면 화약류 출납을 위해 1회 5-10분 정도씩, 하루 평균 3-4회 정도 저장고 문을 연다고 한다. 그러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화약류저장소의 관리 특성상 영업소장이 화약, 폭약 및 뇌관 저장고 출입을 거부하여 저장고 내부 환경을 확인할 수 없었다.
- 3. 의학적 소견: 2002년 3월 4일 오후 4시경 점심 식사 후 화약류저장소 구내 정리와 청소를 하고 나서 10-20분 정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와서 컨테이너 숙소를 다녀온 후, 숨이 차다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하여 119 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었다.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기관 삽관 후 산소 투여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오후 8시 45분 사망하였다. 오후 5시에 촬영한 단순흉부방사선사진에서 비대 청적 폐부종 소견이 나타났다.

4. 결론: 전OO는

- ① 화약류저장소에서 24시간 기거하면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데,
- ② 평소 증상, 과거 진료기록 및 사망 당일 상황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,
- ③ 화약류저장소에서 화약류 출납업무를 위해 저장고를 출입하면서 화약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화약 성분을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.
- ④ 화약 성분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급성 심장사나 만성적으로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으므로,

저장고 내부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업무와 관련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